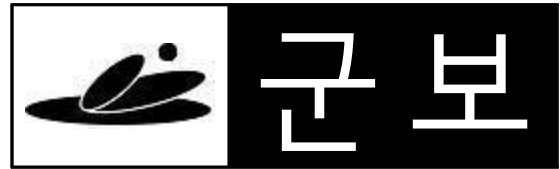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95호 2023. 3. 8.(수)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66호 : 예산군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 지정고시 2
- 예산군 고시 제2023-67호 : 군계획시설(도로:예산소로2-169호 외 1개소, 삼교 중로 2-22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4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416호 : 신조 공인 공고 10
- 예산군 공고 제2023-421호 : 신조 공인 공고(삼교읍 내포출장소) 12
- 예산군 공고 제2023-416호 : 신조 공인 공고(고덕면) 15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413호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예산군 공고 제2023-414호 : 예산군 먹거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7

회									
람									

예산군고시 제2023-66호**예산 군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 지정고시**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의 예산 군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 3. 8.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대흥면 갈신리 1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공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규모)

- 건축 1동 신축 및 부대시설 정비 등 정비 2,840㎡
(건축면적:626.06㎡, 연면적:4,066.25㎡)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청람에듀빌7차(주) 대표 윤길호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건축허가일로부터 ~ 2024.8.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주소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주	비 고
대흥면	갈신리	1	학교	187,233	2,840	국유지 (교육부)	
계					2,840		

예산군 고시 제2023-67호**군계획시설(도로: 예산 소로 2-169호 외 1개소, 삼교 중로 2-22호)****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군계획시설(도로:예산 소로 2-169호 외 1개소, 삼교 중로 2-2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도로:예산 소로 2-169호 외 1개소, 삼교 중로 2-22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년 3월 8일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 사업(예산 소로 2-169, 소로 2-33, 삼교 중로2-22)

나. 사업개요

읍·면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신례원리(신례원역앞)도로 (소로2-169호)개설공사	예산읍 신례원리 243-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소로 2-169호)	도로개설 L=223m, B=8m	
	신례원리 현대아파트앞 (소로2-33호)교차로개선공사	예산읍 신례원리 579-5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소로 2-33호)	교차로 개선 1식	
삼교읍	삼교읍(중앙로)도로(중로2-22호) 개설공사	삼교읍 두리 837-2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중로 2-22호)	도로개설 L=696m, B=15m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 : 2023. 3. 7. ~ 2024.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예산 소로 2-169호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822						
1	신례원	249	1	답	575	134	신판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 105동 2503호(갑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2	신례원	243	1	답	3,180	45	이순금 외2인	예산 예산읍 관작리 515				
3	신례원	243	2	답	3,055	215	김민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산아파트 103-1001				
4	신례원	243	3	대	1,269	23	조원주	서울 강남구 반포동 16-1 미주아파트3동 801				
5	신례원	617		도	12,707	1,405	국토부					

예산 소로 2-33호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신례원	579	5	답	471	31	김승하	대구 수성구 범물동 670 우방미진하이츠 104-1902				
2	신례원	580	2	도	985	81	국토부					
3	신례원	585	3	도	1,591	273	예산군					

삼교 중로 2-22호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 신가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두	567	11	도	55	26	국	국토교통부				
2	두	567	12	대	78	16	공	예산군				
3	두	567	13	대	1	1	공	예산군				
4	두	567	6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5	두	567	4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신가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두	567	11	도	55	26	국	국토교통부				
6	두	837	24	도	2789	810	국	국토교통부				
7	두	567	5	도	124	42	국	국토교통부				
8	두	569	1	도	1424	3	국	국토교통부				
9	두	569	11	도	596.4	5	국	국토교통부				
10	두	567	16	도	184	147	국	국토교통부				
11	두	803	39	도	475.8	15	공	예산군				
12	두	803	33	도	331	258	공	예산군				
13	두	837	23	도	1783.7	1783.7	국	국토교통부				
14	두	803	162	대	258	1	삽교읍새 마을급교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				
15	신가	254	5	도	1531	11	공	예산군				
16	신가	265	55	대	14	14	이준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17	신가	265	35	대	22	22	강원경	삽교읍 신가리 265				
18	신가	265	36	대	17	17	강원경	삽교읍 신가리 265				
19	신가	265	37	대	25	25	강원경	삽교읍 신가리 265				
20	신가	265	58	대	65	65	삽교농 업협동 조합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7-3				
21	신가	265		도	493	460	능성광조	경성부 내자정 186번지				
22	신가	265	61	대	90	90	임순자 외 1인	충남 홍성군 홍북면내용길275번길 128-26				
23	신가	265	54	대	74	74	유현 외 1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04-2				
24	신가	265	46	대	233	66	공	예산군				
25	신가	265	47	대	120	38	공	예산군				
26	신가	265	48	대	31	31	이승섭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02-1				
27	신가	265	34	대	113	24	신혜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353, 303동1006호(하기동, 송림마을아 파트3단지)				
28	신가	265	59	대	33	33	이영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93-10,101동 1002호(예산1차세광엔리치타워아 파트)				
29	신가	265	56	대	47	47	강효숙 외 1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550-4 남선아파트408				
30	신가	265	57	대	40	40	김숙현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238				
31	신가	283	88	대	14	14	이규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443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신가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32	신가	283	100	대	22	22	권옥자	두리 568-55				
33	신가	283	89	대	37	33	권옥자	신가리 283				
34	신가	283	15	대	99	50	공	예산군				
35	신가	283	82	대	35	34	공	예산군				
36	신가	283	90	대	45	45	한인석	신가리 283-33				
37	신가	283	91	대	35	35	정시영	신가리 283-18				
38	신가	283	81	대	28	28	공	예산군				
39	신가	283	80	대	53	53	김종필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95				
40	신가	283	92	대	43	43	이근덕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88				
41	신가	283	93	대	19	19	손정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2, 603호(에다올아파트)				
42	신가	283	87	대	52	52	김이결	두리 803-177				
43	신가	283	70	대	75	75	이수용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550-4 남선아파트1301				
44	신가	283	94	대	10	10	정혜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8				
45	신가	283	95	대	40	40	김의협	수원시권선구금곡동648엘지빌리 지아파트105-1601				
46	신가	283	96	대	56	56	김경철	신가리 283				
47	두	803	208	대	265	1	곽미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2,1303 호(에다올아파트)				
48	두	803	379	도	195.8	28	공	예산군				
49	두	803	1	도	1703.7	38	공	예산군				
50	두	803	34	도	50	21	이은태 외 1인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94				
51	두	803	226	대	680	8	전경배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22길5 2 202호 (역삼동소연하우스)				
52	두	803	27	대	737	6	삽다리 신용협동 조합	삽교읍 두리 803-173				
53	두	803	35	도	306.9	270	공	예산군				
54	두	803	197	대	205	1	최연진 외 2인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197				
55	두	803	153	대	82.5	1	김정섭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63				
56	두	803	385	도	22.4	1	공	예산군				
57	두	803	395	대	14	1	공	예산군				
58	두	803	141	대	192	1	권혁은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89, 1층(선단동)				
59	두	803	131	도	621.5	30	공	예산군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신가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60	두	805	6	도	212	171	국	국토교통부				
61	두	805	2	도	10	10	이명제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				
62	두	792	3	도	40	40	김성권	예산읍 예산리 143				
63	두	792	21	도	28.3	15	공	충청남도				
64	두	792	16	도	51	1	임혜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766-31				
65	두	795	1	도	10284. 2	173	국	국토교통부				
66	두	836	1	구	1283	215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두	837	22	도	2019	2019	국	국토교통부				
68	신가	283	86	대	74	57	인종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길 75-1				
69	신가	283	6	도	33	33	공	예산군				
70	신가	283	4	도	354	112	공	예산군				
71	신가	283	85	대	8	8	이전영	천안시쌍용동1923용암동아 벽산아파트107-201				
72	신가	283	102	대	22	22	이완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443				
73	신가	283	103	대	26	26	박은숙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6				
74	신가	283	104	대	29	29	최옥숙	서울특별시성북구술샘로25길28, 110동201호(정릉동,정릉풍림아이 원아파트)				
75	신가	283	105	대	27	27	이규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443				
76	신가	283	69	대	14	14	공	예산군				
77	신가	283	78	대	4	4	공	예산군				
78	신가	283	79	대	45	45	공	예산군				
79	신가	283	5	도	149	149	공	예산군				
80	신가	282	5	대	48	48	공	예산군				
81	신가	283	106	대	44	44	김선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갈길 89-16				
82	신가	283	83	대	73	73	공	예산군				
83	신가	283	2	도	60	60	공	예산군				
84	신가	283	97	대	13	13	신상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286				
85	신가	283	98	대	14	14	신상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1길 15				
86	신가	283	33	대	11	11	신상철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286				
87	신가	283	8	도	46	46	공	예산군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신가리

번호	리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	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88	신가	283	101	대	21	21	김영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64				
89	신가	290	36	대	4	4	김영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64				
90	신가	290	37	대	17	17	권영은	두리 544-1 삽교빌라 202				
91	신가	290	1	도	33	33	공	예산군				
92	신가	290	33	대	28	28	최광서 외 2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62				
93	신가	290	2	도	36	36	공	예산군				
94	신가	290	35	대	32	32	정진식 외 2인	경기도부천시부일로750번길57,40 3호(역곡동,대우아름빌)				
95	신가	289	37	대	41	41	유동인	전라북도고창군무장면 송림옥동길8-25				
96	신가	290	5	도	56	56	공	예산군				
97	신가	290	34	대	34	34	이병국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58-1				
98	신가	290	31	대	14	14	공	예산군				
99	신가	290	3	도	53	53	공	예산군				
100	신가	290	32	대	50	50	공	예산군				
101	신가	290	29	대	51	51	공	예산군				
102	신가	290	30	대	19	19	공	예산군				
103	신가	290	6	도	36	36	공	예산군				
104	신가	290	27	대	54	54	공	예산군				
105	신가	866	1	구	922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	신가	291	1	도	76	76	공	예산군				
107	신가	291	7	대	63	63	공	예산군				
108	신가	291	9	대	7	7	현상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8-8				
109	신가	873	1	도	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신가	873	8	대	7	7	국	기획재정부				
111	신가	291	8	대	25	25	현상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8-8				
112	신가	292	1	도	86	86	공	예산군				
113	신가	293	2	대	696	1	박성구 외 1인	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5로40, 306동2102호(금호어울림아파트)				
114	신가	293	1	도	964	117	국	국토교통부				

예산군 공고 제2023-416호

신조 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예 산 군 수

- 공인 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23. 2. 27.(월)

등록 공인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공인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횡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신규등록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횡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종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예산군 공고 제2023-421호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예 산 군 수

- 공인 등록·폐기 사유 : 통합인증기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23. 3. 6.(월)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23. 3. 3.(금)

등록 공인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공인	내포출장소 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횡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통합인증기 교체	
	내포출장소 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삽교읍 예산군수인 내포출장소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삽교읍 예산군수인 내포출장소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폐기 공인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사유	비고
공인	내포출장소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횡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통합인증기 교체	
	내포출장소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삽교읍예산군수인 내포출장소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삽교읍예산군수인 내포출장소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예산군 공고 제2023-422호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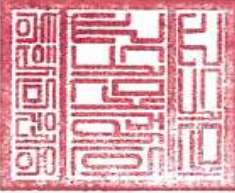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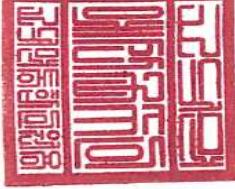
예 산 군 수

- 공인 등록·폐기 사유 : 통합인증기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23. 3. 6.(월)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23. 3. 3.(금)

등록 공인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공인	고덕면 고덕면장인 통합민원용(횡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	
	고덕면 고덕면장인 통합민원용(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고덕면 예산군수인 고덕면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고덕면 예산군수인 고덕면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폐기 공인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공인	고덕면 고덕면장인 통합민원용(횡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	
	고덕면 고덕면장인 통합민원용(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고덕면 예산군수인 고덕면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고덕면 예산군수인 고덕면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예산군 공고 제2023 - 413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나. 출장비 부정 수령자 가산금 징수조항 신설(안 제6조)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7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8.(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서무팀(☎ 041-339-7212, fax 041-339-72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3. 3. 8.(수) ~ 2023. 3. 28.(화)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
(우편번호 32435)
- 전자메일 : shinyj815@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 (041)339-7212, FAX: (041)339-72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원경찰법」 제2조”를 “「청원경찰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영 별표 1의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7조로 하고,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

외하고,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정 제17조”를 “영 제17조”로,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각각“예산군수”로 본다”를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 제8조의2”를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인사혁신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정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로,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를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규정 제24조제5항”를 “영 제24조제5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규정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p> <p>2. 「청원경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p>	<p>제2조(적용범위) ----- ----- ----- -----.</p> <p>1. 「지방공무원법」 제2조----- -----</p> <p>2. 「청원경찰법」 제2조----- -----</p>
<p>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u> 라목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u>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u>별표 1</u> ----- -----.</p> <p>② ----- ----- <u>영 별표 1의 각호</u>----- -----.</p>
<p><u>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u>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1</u>”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삭 제></p>
<p><신 설></p>	<p><u>제4조(국내여비 지급)</u>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u>영 별표 2의 기준</u>에 따라 지급한다.</p>
<p><u>제4조</u> (생략)</p>	<p><u>제5조</u> (현행 제4조와 같음)</p>

<신 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준용한다.

- 1.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각각 “예산군수”로 본다.
- 2. 규정 제8조의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 2. 영 제8조의2제5항, -----
----- “인사혁신처장-----

여”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

-----.

3. 영 제18조제1항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별표 1]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반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율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예산군 공고 제2023-414호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7일

예 산 군 수

1. 조례(규칙)명 :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예산군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제6조)
- 다.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6조)
- 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제1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3. 7. ~ 3.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 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농정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먹거리지원팀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91-19(우편번호 : 32425)

- 전자메일 : j961206@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8272, 팩스: 041)339-7559

라. 제출방법 : 우편, 메일, 전화, 팩스(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발췌서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예산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지역 먹거리를 군내 우선 공급되어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예산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 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3.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체계 분석
4. 지역 먹거리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쓰레기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교육체육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3. 예산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예산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예산군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면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 경우 해촉되는 위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중
간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
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
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먹거리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 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탁 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예산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지원 사업
2. 직매장·가공센터·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으로 소비촉진 지원 사

업

3. 농업인·소비자의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4. 지역 먹거리 소포장·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3]관계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4]**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산군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안 제16조)
 - 예산군 먹거리위원회 위촉위원에 지급되는 제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비용 발생이 연간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 조례에 따른 먹거리 지원사업은 향후 사업이 구체화 될 시 예산 규모가 결정될 사안으로 조례 제정 시점에서 예산 규모를 특정할수 없음.

4. 작성자 : 농정유통과장